가축이동제한 해제 이후가 더 중요하다

5월말까지 위기경보 현행 '주의' 단계 유지

구제역과 AI(조류인플루엔자) 발생으로 취해졌던 가축 이동제한이 해제됐다. 지난 2월 17일부터 3월 29일까지 공주, 천안, 홍성, 논산 등 충남지역에서 구제역이 발생한데 이어 3월 23일부터 4월 5일까지 이천, 광주 등 경기지역에서 AI가 발생하자 정부는 해당지역의 가축이동제한 조치를 내렸다. 이후 농림축산식품부는 충남도에 대한 일제검사와 권역별반출제한, 일시이동중지, 사전검사제도 운영 등의 특별방역조치를 취했다. 이 같은 조치가 구제역 확산차단에 효과가 있다는 판단에따른 것이다. 실제 구제역의 경우 2010~2011년 3748건이 발생해돼지 등 348만마리가 살처분됐으나 2014~2015년은 185건이 발생해17만마리를 살처분하는데 그쳤다.

과거에 비해 비교적 짧은 기간 내에 그것도 적은 피해로 마무리돼 여간 다행스러운 일이 아니다. 그렇더라도 마음을 놓아서는 안 된 다. 철저한 구제역 백신접종으로 항체가 80% 수준 이상의 방어력과 체계적인 검사· 예찰활동을 실시해 구제역 재발을 막아야 한 다. 방역당국을 비롯해 전국의 지자체, 농가 들은 구제역 항체 형성률 제고에 만전을 기해 야 한다.

구제역의 피해는 재산상의 피해뿐만 아니라 양돈산업의 미래와도 직결된다고 할 수 있다. 구제역이 확산될 경우 경제적 피해는 천

문학적으로 늘어나고, 연관 산업에 영향을 미쳐 그 피해액은 상상을 초월한다. 더욱이 내수시장은 물론이고 수출까지 중단되는 고통도 감수해야 한다

농식품부가 이동제한은 해제했으나 구제역 및 AI 특별대책기간인 5월 말까지 위기경보 를 현행 '주의' 단계로 유지키로 한 배경이다. 이와 동시에 구제역 및 AI의 추가 발생방지를 위한 방역대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, 상반 기 중 그간 일제검사를 하지 않은 구제역 비 발생 시·도에 대해서도 단계별로 일제검사 를 실시키로 한 것은 옳은 판단이다.

농가 역시 자율방역시스템에 따라 소독설 비를 구비하는 것을 비롯해 의무교육 이수, 축산업 허가·등록 실시, 외국인근로자 신고, 백신접종·소독 실시, 방역기관으로부터 검 사 이수 등을 반드시 이행해야 한다

무한경쟁시대를 맞아 축산업이 살아남기 위해서는 안전에 대한 이미지를 쌓아야 하고, 그 첫걸음이 가축질병으로부터 자유로워지 는 것이다. 철저한 예방만이 국내 축산업을 지킬 수 있고, 소비자들로부터 국산 축산물을 애용할 수 있게 하는 최선의 길임을 다시 한 번 강조한다. 이번 가축이동제한 해제 조치가 국내 축산물의 안전성을 강화하는 기점이 되 길 바라다.

농수축산신문 [2016, 05, 04]